공증업무 확대방안

한 기 찬
법무법인 씨엘 대표 변호사

편집자 주 | 이 자료는 2010. 10. 25.(월)부터 26.(화)까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법원 · 헌법재판소 · 법무부 · 대한변호사협회 · 한국법학교수회 · 한국법학원이 주최하고, 한국법학원이 주관한 "제7회 한국법률가대회" 일정 중 〈공증사무의 직역확대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 8' 분과에서 발표된 자료로서, 발표자의 요청에 따라 전문을 게재합니다. 또한 이 자료는 한국법학원이 발간하는 『저스티스』 "한국법률가대회 특집호" 통권 제121호(2010. 12.)에 전문이 게재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Ⅰ. 들어가는 말

'공증' 이란 넓게 보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고 이에 수반되는 제도라고 풀이되지만, 좁게 보면 '공증인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 그밖에 법률행위나 사건에 관한 사실 등에 의하여 공정증명력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증이라는 제도는 공증의 주역인 '공증인' 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증인제도와 공증제도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천을 거듭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공증제도가 도입 · 시행된 것은 국권 상실 이후인 1913년 3월 17일 일제에 의하여 제령 제3호로 공포된 조선공증령이 그 효시로 알려지

고 있다.

이 조선공증령에 의하여 근대적의미의 공증제도와 함께 전문적인 공증인제도가 생겨났지만 당시 조선인으로서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며, 공증인은 전부 일본인이 독점하였는데, 공증인사무소의 설치가 인가된 지역도 서울, 평양, 대구, 부산 등 4개소뿐이라고 한다.

광복 이후, 그리고 정부수립 이후에도 조선공증령은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가 우리나라가 자체적인 공증인법을 갖게 된 것은 1961년 9월 23일 공증인법(법률 제723호)의 제정으로부터이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한 공증인 수는 당시 전국에 10여 인을 헤아릴 정도에 불과하여 공증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증제도의 이용은 극히 미미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증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은 1970년 12월 31일 제정된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법은 변호사들의 조합체라고 할 수 있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증인(겸업공증인)을 탄생시킴과 동시에 공증업무영역도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는데, 어음 · 수표에 대한 공증과 법인의 의사록에 대한 인증제도가 그것이다.

새로운 공증주체창설 그리고 공증업무영역의 확대로 인하여 10년 만에 전국에 약 80여 개의 합동법률사무소가 생겨났고, 이에 의해 연간 공증처리건수의 90% 이상인 224만 건을 합동법률사무소가 처리하게 되었다.

당초 '법조경력이 일천한 변호사의 지도 · 육성과 노후생활 보장이 되지 않는 고령변호사의 직업적 보장' 을 위하여 창설된 합동법률사무소 제도는 우리나라 공증제도의 비약적인 활성화라는 긍정적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임명공증인과 겸업공증인(합동법률사무소) 이라는 2원적 공증인제도에 의하여 획기적인 발전을 보게 된 우리나라의 공증제도는 1982년 12월 31일 개정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제도의 도입으로 또 한번 커다란 변화의 계기를 갖게 된다.

이것은 법무법인이 설립인가를 받으면 공증사무소의 설치신고만으로 공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의미한다.

당시 법무법인 제도의 도입배경으로는 사법시험 합격자의 대폭 증원(연 300명)에 따른 법조인력의 새로운 직역확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국가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호경기의 지속에 따라 새로운 법률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변호사

들의 단순한 송무위주의 업무형태에서 법인의 대형화 · 전문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공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 법무법인은 90년대에 들어와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년에 300명에서 500명, 700명 마침내 1,000명 대에 달하면서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소장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하여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의 창설도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1 공증인 현황 참조)

<표1> 2010년도 새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현황

(2010.8.31. 현재 기준)

소속 검찰청	공증인		인가공증인				대행청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계	
서울중앙	12	6	89	123	28	151	
서울동부	3	2	3	9	0	9	
서울남부	4	0	7	17	2	19	
서울북부	3	0	2	7	0	7	
서울서부	3	2	2	7	1	8	
의정부	3	1	6	13	0	13	
인천	6	0	9	23	1	24	
수원	10	6	17	37	1	38	
춘천	3	1	2	2	1	3	2
대전	5	2	8	8	1	9	2
청주	3	2	3	8	0	8	1
대구	7	3	9	14	6	20	3
부산	7	2	11	12	7	19	
울산	3	2	2	7	0	7	
창원	4	4	5	8	0	8	2
광주	6	2	9	10	6	16	2
전주	3	0	4	4	2	6	2
제주	1	1	2	1	1	2	
계	86	36	190	310	57	367	14

* 인가공증인의 정원제 도입. 단, 정원이 초과된 현원은 정원이 될 때까지 정원으로 간주

[자료제공] 법무부 법무과

이렇게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천을 거듭해 온 공증제도는 결국 공증인을 임명공증인과 겸업공증인(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와 공증인가 법무법인)으로 2원화 내지 3원화하여 유지되었으나, 이에 대한 규율의 근거법이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으로 나누어지고, 난립이라고 할 정도로 법무법인의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공증제도의 부실화가 우려되자 공증인제도는 또 한번 변화를 겪게 된다. 즉 2010년 2월 7일 공증인법의 개정이 그것이다. 개정 공증인법은 공증제도의 규율 · 감독을 일원화하였다. 이에 따라 공증인은 '임명공증인',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을 '인가공증인' 으로 구분하고 공증인에 대한 정원제도를 도입하고 법무부의 감독을 대폭 강화하였다. 정원제도의 도입은 향후 인가공증인, 즉 법무법인 등에 대한 신설 인가를 엄격히 하고 그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한 인가공증인에 대한 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증인법의 개정으로 일단 우리나라의 공증인제도의 법적인 정비는 일단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남은 문제는 제도의 정비에 못지않게 공증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공증제도의 목적의 달성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박한 의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본적인 문제제기이지만 공증제도는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지위를 갖는가? 즉 공증제도는 사법제도를 보조 · 보완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법제도와는 그 주체 · 기능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자적인 제도인가?

둘째, 현재의 공증업무는 예방사법적기능, 증거보전기능 및 강력한 증명력부여기능 등에 비추어 더 확대할 여지는 없는 것인가? 특히 사법부나 수사기관에 제기하는 법적분쟁은 현재의 법원, 검찰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폭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는데, 공증업무의 확대로 이 증가하는 법적분쟁을 획기적으로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국민의 편의라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설치된 공증인사무소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좀더 쉽고, 값싸고 안전하게 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넷째,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공증수수료는 과연 공증인들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그 전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세워 줄 수 있을 정도로 적정한 것인가?

이 글은 이런 문제 의식 하에, 약 15년 간 공증업무를 해 본 경험에 비추어, 공증업무

를 계속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공증 현황

1. 공증인 현황

현재 (2010. 8. 31) 공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공증인은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그리고 공증인이 없는 지역에서 공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행청(검찰청, 전국 13개 지역에 있다)의 그 현황은 다음 표2와 표3과 같다.

인가공증인은 합동법률사무소 62개소, 법무법인 309개소이고 여기에 소속된 공증인(변호사)은 모두 2,469명이다.

<표2> 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현황 추이

연도	공증인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대행청
		사무소	구성원	사무소	구성원	
1999	12	136	788	80	355	16
2000	13	161	943	78	348	15
2001	16	172	1003	76	326	14
2002	15	193	1110	76	317	14
2003	21	207	1260	75	312	14
2004	24	223	1389	72	297	14
2005	29	242	1546	70	312	14
2006	30	256	1722	68	298	14
2007	30	282	1917	67	288	13
2008	33	295	2089	64	273	13
2009	34	309	2209	62	260	13

[자료제공] 법무부 법무과

<표3> 공증인이 없는 지역 대행청 14곳

소속검찰청	대행청(지청 관할지역)
춘천지검	속초지청(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영월지청(정선군,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대전지검	논산지청(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공주지청(청양군, 공주시)
청주지검	영동지청(영동군, 옥천군)
대구지검	상주지청(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의성지청(청송군, 군위군, 의성군) 영덕지청(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창원지검	밀양지청(밀양시, 창녕군) 거창지청(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광주지검	장흥지청(장흥군, 강진군) 해남지청(진도군, 완도군, 해남군)
전주지검	정읍지청(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남원지청(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계	14

[자료제공] 법무부 법무과

개정공증인법에 따라 도입된 공증인 정원 제도에 의하면 임명공증인은 정원 86명에 비하여 현원은 36명으로서 50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무부의 방침에 의하면 인가공증인 사무소가 스스로 해산하거나 인가취소될 경우에 그 인가공증인사무소 구성원이 계속하여 공증업무만을 전담하려고 하는 경우 공증장부의 계속적 보관과 집행문부여 등 후속처리 업무를 감안하여 인가취소된 법무법인의 구성원 중 1인을 임명공증인으로 임명해 주고 있는 것 같다.

한편 인가공증인은 정원 190명에 현원 367명으로 일단 정원 초과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법무부의 방침은 향후 공증인가를 받으려는 법무법인 등의 설립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공증인가를 통제하는 일방 기존의 인가공증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거나 개정공증인법 제15조의 8 소정의 재인가를 통하여 인가취소를 유도하려는 듯 하다.

그러나 개정공증인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인가공증인의 정년도 75세로 한정되었고, 이 정년이 도래되는 2012년에는 정년초과의 인가공증인이 대량발생이 예상되고, 그 후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하는 구성원 5명 이내의 소형 법무법인은 대량의 해산 또는

인가취소가 예상되는 바, 이에 의하여 2012년 이후 인가공증인 현원의 대폭감소는 불가피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아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이 실제 전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바, 표3의 자료는 지방검찰청 소재지 또는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법원 · 검찰청이 없는 구리, 남양주, 파주, 김포, 용인, 광명, 안양, 군포, 홍성, 구미, 김해 등에도 인가공증인은 존재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 발간 '변호사 명부' 참조)

앞으로 2013년 이후부터는 연간 2,000여 명 이상 법조인력이 대량배출(로스쿨 출신자 + 사법시험 합격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공증인 부재 지역에도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인가공증인이 등장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임명공증인도 인가공증인도 없는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는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공증을 대행하고 있는 바 이를 '대행공증인'으로 부른다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공증인이 없어서 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 공증사무 처리건수 현황

1996년부터 2009년까지 13년간 공증인에 의해 처리된 공증사무 처리건수는 다음 표4의 자료와 같다.

<표4> 공증사무 처리건수 현황 누계

(매년 12.31.기준 / 단위; 건, 원)

구분 / 연도	공정증서 작성	정관 인증	법인의사록 인증	사서증서 인증	확정 일자부	기타	계	가 액
1996	860,641	31,556	247,631	558,136	1,496,601	177,937	3,372,502	27,719,548,241,721
1997	902,212	34,104	283,926	606,742	1,327,160	190,955	3,345,099	30,491,178,110,749
1998	941,327	30,777	294,483	611,880	953,720	284,832	3,117,019	27,395,370,333,638
1999	924,172	48,807	343,284	603,464	1,075,175	282,540	3,277,442	30,358,693,968,621
2000	882,832	60,950	433,038	714,235	1,082,084	267,069	3,440,208	38,416,829,511,505
2001	1,165,762	61,864	764,399	1,090,148	1,352,164	307,473	4,741,810	37,185,829,511,505
2002	1,209,329	60,782	495,616	804,186	984,977	433,344	3,988,234	46,623,278,453,465
2003	2,095,568	57,780	567,896	855,869	2,912,883	708,101	7,198,097	75,814,716,536,873
2004	1,022,003	47,721	492,795	911,697	751,567	411,268	3,637,051	70,206,071,853,069
2005	690,330	54,004	505,817	1,087,973	1,098,744	217,190	3,654,058	61,117,672,922,344
2006	691,710	52,186	533,277	1,018,542	1,157,162	167,754	3,620,631	78,991,376,920,882
2007	799,089	55,156	553,276	1,084,259	1,363,924	191,112	4,046,816	70,418,852,024,266
2008	779,806	51,851	543,118	909,435	1,758,332	215,548	4,258,090	59,563,370,695,375
2009	684,944	33,035	499,386	785,977	1,532,955	161,963	3,698,260	51,431,095,953,031

[자료제공] 법무부 법무과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공증사무의 모든 영역, 즉 공정증서 작성, 정관 인증, 의사록 인증, 사서증서 인증, 확정일자 부여 등의 처리건수가 한결같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의 지속적인 불경기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공증인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증사무 처리건수가 감소세라는 점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함을 역설하고 있다.

<표>5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공증사무 처리건수는 1989년 약 435만 건에서 1999년 약 370만 건으로 감소하였고, 이 10년 동안 공증인 수는 약 400명이 증가하였다.

<표5> 공증현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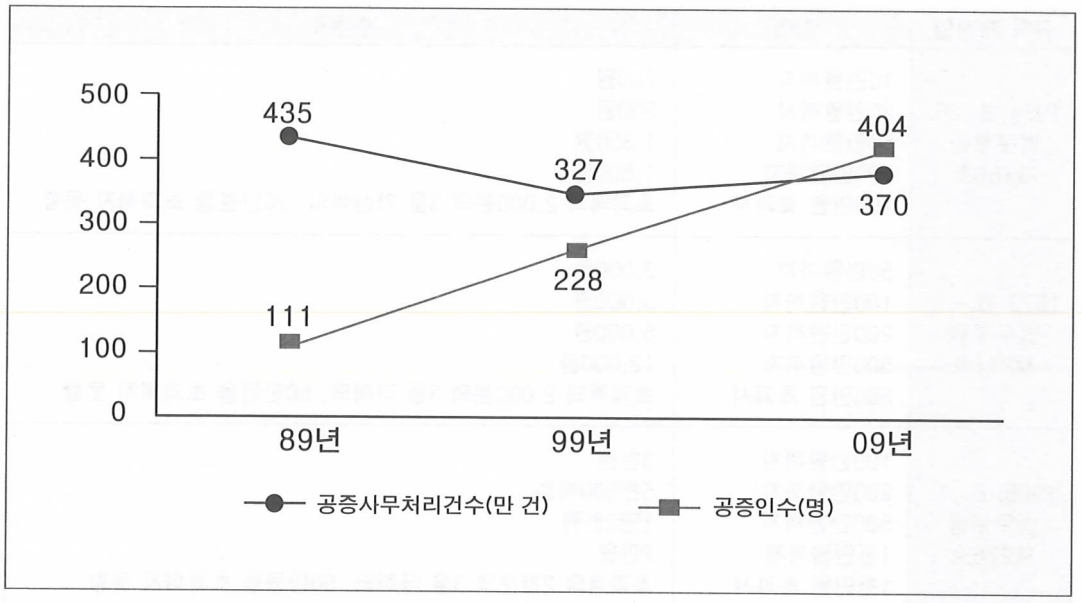

그리하여 경험에 비추더라도 공증업계에서는 대형 · 대량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좁은 지역에서 난립하여 경쟁하는 대부분의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 등에서는 수입의 감소로 공증실 인력의 인건비 정도를 겨우 충당하는 수준이어서(적자 상태), 해산하고 싶어도 해산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을 호소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3. 공증수수료 현황

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처리하고 받는 대가는 수수료 · 일당 및 여비로 되어 있고, 이 수수료 등은 법무부장관이 법무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공증인법 제15조).

이 법무부령에 의한 것이 '공증인수수료규칙'이다. 1971년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제도창설과 함께 정해진 수수료규칙은 40여 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4~5년을 주기로 하여 모두 9차례 개정되어 왔는데 그 내역은 다음의 표6, 표7과 같다.

<표6> 공증수수료 중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변화 추이

규칙 개정일	가액	수수료
1974. 8. 26. 법무부령 제188호	10만원까지 20만원까지 50만원까지 100만원까지 100만원 초과시	750원 900원 1,350원 1,800원 초과액의 2,000분의 3을 가산하되,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1979. 6. 15. 법무부령 제211호	50만원까지 100만원까지 200만원까지 500만원까지 500만원 초과시	2,000원 3,000원 5,000원 12,000원 초과액의 2,000분의 3을 더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1985. 8. 1. 법무부령 제275호	100만원까지 200만원까지 500만원까지 1천만원까지 1천만원 초과시	3천원 5천500백원 1만3천원 2만원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1986.12. 24. 법무부령 제292호 (1985년도와 동일)	100만원까지 200만원까지 500만원까지 1천만원까지 1천만원 초과시	3천원 5천500백원 1만3천원 2만원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1991.10. 7. 법무부령 제356호	200만원까지 500만원까지 1천만원까지 1천500만원까지 1천500만원 초과시	1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1993. 2. 24. 법무부령 제366호	200만원까지 500만원까지 1천만원까지 1천500만원까지 1천500만원 초과시	1만500원 2만1천원 3만1천500원 4만2천원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1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1996. 12. 31. 법무부령 제435호	200만원까지 500만원까지 1천만원까지 1천500만원까지 1천500만원 초과시	1만1천원 2만2천원 3만3천원 4만4천원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규칙 개정일	가액	수수료
2006. 12. 14. 법무부령 제604호	200만원까지 500만원까지 1천만원까지 1천500만원까지 1천500만원 초과시	1만1천원 2만2천원 3만3천원 4만4천원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2010. 2. 5. 법무부령 제693호 (2006년도와 동일)	200만원까지 500만원까지 1천만원까지 1천500만원까지 1천500만원 초과시	1만1천원 2만2천원 3만3천원 4만4천원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위 자료는 공증인수수료규정에서 현행과 같은 공증인수수료규칙으로 전환되던 1974년부터 통계임
(즉, 1974년 개정은 공증인수수료규정이었으며, 1979년부터는 공증인수수료규칙임, 이하 인용 동일)

<표7> 공증수수료 중 사서증서 인증 상한, 정관인증 수수료 변화 추이

규칙 개정일	사서증서 인증상한	외국어 인증 수수료	정관 인증
1974. 8. 26. 법무부령 제188호	15만원	별도 조문 없음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2천분의 1 단, 상한 10만원
1979. 6. 15. 법무부령 제211호	25만원	별도 조문 없음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1천만원까지는 1만원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 가산 단, 상한 20만원
1985. 8. 1. 법무부령 제275호	25만원	별도 조문 없음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3만원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 가산 단, 상한 20만원
1986. 12. 24. 법무부령 제292호	25만원	사서증서 인증수수료 2배 가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3만원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 가산 단, 상한 20만원
1991. 10. 7. 법무부령 제356호	50만원	사서증서 인증수수료 2배 가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4만5천원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 가산 단, 상한 20만원
1993. 2. 24. 법무부령 제366호	75만원	사서증서 인증수수료 2배 가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5만원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 가산 단, 상한 50만원

규칙 개정일	사서증서 인증상한	외국어 인증 수수료	정관 인증
1996. 12. 31. 법무부령 제435호	100만원	사서증서 인증수수료 2배 가산 단, 상한 200만원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6만원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 가산 단, 상한 60만원
2006. 12. 14. 법무부령 제604호	150만원	사서증서 인증수수료 2배 가산 단, 상한 300만원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 가산 단, 상한 100만원
2010. 2. 5. 법무부령 제693호	50만원 (하향)	사서증서 인증수수료의 1배 가산 단, 상한 100만원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 가산 단, 상한 100만원

*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의 2분의 1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들이 공증인을 겸업하면서 공증수수료 수입도 얻어 마치 공증으로 떼돈을 버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 수수료 내역을 보면 수수료가 얼마나 적은 금액인지를 알 수 있다. 다른 전문직종(법무사나 공인중개사)에 비해 훨씬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공증인들의 숙원은 공증사무 영역확대와 함께 수수료 인상이지만 수수료 인상은 정부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공증업계가 바라는대로 적시에, 만족할만큼 인상되는 것 같지는 않다.

Ⅲ. 공증업무 확대방안

1. 논의의 전제

공증제도가 갖는 '기능' 으로는 강학상 대체로 예방사법적 기능, 증거보전의 기능, 강력한 증명력의 부여 기능을 들고 있다. 그런데 공증실무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공증이나 인증은 당사자에게 공증이나 인증을 하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력한 '심리적 강제 기능' 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공증인은 대체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의 인증, 법인의 정관이나 의사록의 인증, 확정일자의 부여, 그 밖에 집행문 부여, 거절증서 작성, 주식회사 설립조사 보고, 신

탁재산의 표시 등을 그 사무영역으로 하고 있지만, 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증서, 유언 등에 대한 공정증서작성, 계약서 · 각서 · 합의서 등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정관과 의사록에 대한 인증업무가 대종인 것 같다.

이러한 업무를 통하여 공증이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분쟁의 예방에 실제 얼마나 기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경험적으로 보건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어음 · 금전소비대차증서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채무자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집행문 부여 신청이 실제 작성 교부된 공정증서에 비해 10분의 1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분쟁의 예방적 자율적 해결기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 이래 주주총회 관련 분쟁이 격감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무엇이 이런 긍정적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가?

공증이라는 것이 단지 채권자 · 채무자가 공증인사무소에 출석하여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수락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 · 교환한 것뿐인데 말이다.

이에 비하여 소송사건의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 2007년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전년대비 7.6%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2008년 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출처 사법연감 2008년판). 이로 인해 전국의 법원은 사건의 폭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사기관도 격증하는 민사형 고소 · 고발사건으로 그 수사력의 대부분을 이 고소 · 고발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법원과 수사기관이 사건의 폭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상을 감소 · 완화하는 방안은 공증제도의 활성화를 통하는 방법이 최선일 듯 싶다.

그 근거는 이렇다. 공증인의 자격은 엄격하게 법정화되어 있고, 공증업무는 국가의 강력한 감독을 받는다. 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은 법무부령인 수수료규칙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이 비용은 소송비용에 비하면 놀랄 정도로 저렴하다.

또 이제 전국에는 사실상 공증인이 없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상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 국가는 공증제도의 활성화를 향한 커다란 결단을 내려도 좋을 만큼 여건은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겠다.

공증제도의 활성화란 곧 공증인의 사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이고 그 확대는 일단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공증 또는 인증을 의무화 내지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또 이러한 공증사무처리영역의 확대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반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여 영역확대는 그 업무의 주인공인 공증인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오해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격증하는 분쟁을 예방 · 감소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공증제도를 값싸고, 편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즉 국민편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백번 옳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그동안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공증을 강제하자는 방안, 즉 공증업무 영역확대 방안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시 · 주장해 온 방안을 소개하고 사견을 덧붙여 보고자 한다.

2. 공증업무 확대와 관련한 기존의 제시 방안들

가. 부동산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

이 방안은 현재 부동산 등기에 대해 공신력이 부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의 등기시 그 부실 · 허위등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다.

그동안 국가는 부동산등기의 부실 · 허위를 막기 위해 갖가지 제도, 예를 들면 검인계약서 제도, 부동산거래의 실명화, 등기의무의 강제, 미등기전매의 금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실거래가격 신고의 강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보았으나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실효가 없으므로 차제에 부동산등기원인증서에 대해 공증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의 취지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법제에서는 가장매매, 명의신탁, 소위 다운계약서 작성 관행, 세금탈루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부실허위등기가 상당하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막자는 발상, 즉 부동산등기제도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지, 단순히 공증인 좋으라고 공증업무영역을 확대하자는 발상에서 제기된 것은 물론 아닌 것으로 보인다.

통계를 보더라도 2008년 1년간 법원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 중 부동산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청구 사건은 25,874건으로 전체접수사건의 7.1%, 근저당권설정 · 말소청구사건은 3,089건으로 0.8%, 사해행위취소사건은 7,627건으로 2.1%, 부동산매매관련 매매

대금청구 사건은 14,221건으로 3.9%를 차지하여 전체 합계 약16%에 달하는 사건이 결국 부동산관련 분쟁사건이다. 이밖에도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예컨대 손해배상 등)을 합하면 민사본안사건의 상당부분이 결국은 부동산등기나 매매를 둘러 싼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어쨌든 부동산등기원인증서에 대한 의무적공증제도가 도입 실현된다면 그 주된 목적은 부동산등기의 진실성 확보, 거래안전, 투명한 부동산거래, 이로 인한 탈세예방 등이라 하겠지만 부수적으로는 공증인들에겐 공증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셈이다.

부동산등기원인증서에 대한 의무적 공증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이미 학계, 법무부 등에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공증대상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 하더라도 공증인지 인증인지, 공증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이로 인한 부동산거래시의 비용증가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각론적인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이 방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문제점보다 제도의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공증제도는 형식상 프랑스 독일 등 소위 대륙법계 국가들의 공증제도로서 라틴계 형식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독일 · 프랑스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등기 공증을 우리라고 못 할 이유는 없다.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 2009년 6월 1일 현재 공증인은 8,901명이며 업무비중을 보면 부동산 관련 공증이 49%, 부동산중개 관련 공증이 4% 정도로서 합계 54%의 업무가 부동산 관련 업무이다. 공증인은 자신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기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며, 이때 등록세 등 세금납부절차도 대행한다. 부동산거래의 당사자로부터 부동산관련 세금(우리말로 치면 취득세 · 등록세)을 받아 그 납부도 대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프랑스의 공증인은 부동산등기신청과 세금납부도 대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증인이 부동산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을 할 수 없다는 반대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비리의 복마전,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연간 약 1,000만 건이 넘는 우리나라 부동산거래와 부동산등기에서 공증인에 의한 부동산공증제도는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혁명적 변화의 첫 걸음이 되고, 공증인에게는 안정적이고 자존심을 지키는 전문직업인으로 거듭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 신청건수는 약 10,425,424건인데, 그중 소유권보존등기가 139,331건, 소유권이전등기가 2,293,909건, 소유권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가 2,446,367건, 등기말소 2,459,529건 이다 (다음의 표8 참조)

<표8> 2009년말 부동산 및 선박등기 접수사건표

구분 / 등기의 목적	계		부동산		선박		입목 등	
	건수	개수	건수	개수	건수	개수	건수	개수
합계	10,434,119	17,867,533	10,425,424	17,857,017	8,622	10,332	73	184
소유권보존	139,634	548,438	139,331	548,118	283	291	20	29
소유권이전	2,295,358	3,639,150	2,293,909	3,637,546	1,442	1,585	7	19
소유권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	2,447,679	3,884,640	2,446,367	3,882,814	1,301	1,756	11	70
가등기 및 가등기이전	49,132	93,163	49,054	93,076	78	87	–	–
환매특약 및 환매권이전	10	60	10	60	–	–	–	–
변경·경정	1,672,533	2,915,017	1,670,603	2,912,752	1,922	2,244	8	21
분할·합병	439,522	1,154,745	439,521	1,154,744	–	–	1	1
멸실	44,190	96,918	44,190	96,918	–	–	–	–
예고	4,399	15,999	4,392	15,992	7	7	–	–
말소	2,461,990	3,845,757	2,459,529	3,842,784	2,456	2,967	5	6
말소회복	452	3,765	451	3,764	1	1	–	–
멸실회복	–	–	–	–	–	–	–	–
가압류·가처분	254,686	639,057	254,116	638,280	570	777	–	–
압류 (체납처분등)	475,309	578,267	474,952	577,879	357	388	–	–
경매기입 강제관리	114,510	268,989	114,325	268,771	183	199	2	19
파산·화의 회사정리	747	2,202	747	2,202	–	–	–	–
신탁	6,512	69,074	6,512	69,074	–	–	–	–
기타	27,456	112,292	27,415	112,243	22	30	19	19

[출처] 법원행정처, 2010. 7., 2010 사법연감, 966쪽

나. 집행증서의 확대

우리나라에서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어음 · 수표에 대한 공정증서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고(그러나 수표에 대한 공정증서는 실무상 그 사례가 지극히 적고 대부분이 어음의 경우이다) 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은 공증인의 업무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민사영역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배제해야 할 이론적인 근거는 없거나 현실적인 필요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대만의 경우처럼 공증인이 특정 동산이나 토지 · 건물 등의 인도 · 명도의무에 대해서 공정증서, 즉 집행증서를 작성해 주면 안 되는 걸까?

현재 특정의 동산이나 토지 · 건물 등의 인도 · 명도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면 번거로운 판결절차를 거치거나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수밖에 없다.

2009년도에 법원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 중 건물의 명도 · 철거청구사건은 35,605건으로 전체 사건 중 10.1%를 차지하고 있고, 제소전화해 신청사건도 다음 표9에서 보듯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9> 화해사건(제소전) 전국 법원 합계 누년비교표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
건수	6,486	7,102	9,291	9,025	8,081	8,383	8,911	9,585	10,871	10,905	8,864

[출처] 법원행정처, 2010. 7., 2010 사법연감, 622쪽

제소전화해조서를 받기까지 보통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동산의 인도, 부동산의 철거 · 인도 · 명도 등에 대해서도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결하여 법원의 재판사무량을 줄여주고 국민의 편익의 도

모를 위해서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절실해 보인다.

특히 부동산의 집행은 그 '목적물의 특정'이 중요한데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신축 건물인 상가, 아파트는 그 설계도에 의하여 그 위치 · 평수의 특정이 훨씬 용이해진 상태이므로, 이러한 공정증서에 설계도면 등의 첨부를 통해 집행실시가 가능한 상태로 집행증서를 공증하는 경우 목적물의 특정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참고로 독일은 1997년 12월 17일 특정 동산과 토지 · 건물(주거용건물은 제외) 등도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도 1962년 공증인법 개정을 통하여 주거용건물의 명도청구를 제외한 그 이외의 급부의무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허용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정 동산과 토지 · 건물의 철거 · 명도 · 인도와 관련하여 공정증서 작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등의 채무자에게 가혹해진다는 반대론이 있을 수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불허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다. 가족법영역에서 공증의 확대

법률상으로 제도는 도입되어 있으나 무지, 홍보부족, 사회적 여건의 미비로 인한 시기상조 등으로 그 제도의 이용이 미미하거나 저조한 영역이 많다. 그 대표적 영역이 가족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의 방식의 하나로 1960년 민법 제정과 동시에 도입되었으나 과거 '빈곤의 시대'에는 상속시킬 재산이 없거나 미미하여 그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였다. 그러나 최근 유언공정증서의 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 최근 '연세대학교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하여 연명치료중단과 존엄사문제가 세간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자 사전의료지시서 또는 존엄사동의서 등과 같은 사서증서 인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을 실무상 확인할 수 있다.

가족관계 영역에서 공증 또는 인증의 대상을 확대하여 공증인에 의하여 당사자들의 그 의사표시의 정확성을 담보할 사회적 필요나 수요는 앞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

망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가족법영역에서 공증 또는 인증의 대상을 확대할 부분이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다.

(1) 협의이혼의사 확인에 대한 공증역할의 확대

한 해에 10쌍이 혼인하면 4쌍이 이혼한다는 최근의 통계에 비추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0에서 보듯이 2009년 법원에 접수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건수는 144,262건이다.

<표10> 2009년말 협의이혼의사 확인 건수

구분 / 법원	금년접수	처 리			
		합계	허가	불허가	기타
합계	144,262	144,549	94,829	5,928	43,792

[출처] 법원행정처, 2010. 7., 2010 사법연감, 984쪽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협의이혼제도라는 비교적 용이한(?) 이혼절차 때문일 수도 있다.

법관에 의한 이혼의사의 확인 그리고 이혼숙려기간제도 등의 도입으로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려는 갖가지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늘어나고 있고 그중에 대부분이 협의이혼이다.

그러나 협의이혼이란 근본적으로 혼인당사자에게 이혼의 자유를 긍정하고, 그 의사표시의 합치에 기해서 혼인을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협의이혼 그 자체를 부정시하거나 매도할 수만은 없다.

그런데 이 협의이혼의사를 반드시 법관의 면전에 출석하여 법관만이 확인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공증인이 이를 확인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을까?

하여 협의이혼의사도 법관이 아닌 공증인에 의해 확인(아마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인증' 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하게 하면 어떨까?

이 공증인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에 수반한 양육자지정과

변경, 친권자의 지정은 물론 양육비의 부담자, 부담의 조건과 지급의 방법 등도 함께 합의된 것을 확인서에 기재하도록 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그 지급을 확실히 해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위자료, 양육비 등의 금전 지급 부분은 별도로 사후 불이행시 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로 하도록 공증인이 유도, 권유하게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2) 성년의 후견제도 도입시 그 계약의 공증

주지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 고령에 따른 치매, 뇌졸중, 중풍 등의 질병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신체 장애의 경우도 늘어가고 있다.

이렇듯 심신의 장애로 판단의 장애를 겪는 성년자들의 재산관리 등의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은 높아가고 있으나 현행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그 이용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 대처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입법론으로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연구 끝에 2007년 5월 성년후견인제도에 관한 법률시안이 제시되었고, 2006년 8월에는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안되기도 하였으며, 2008년 법무부와 한국민사법학회가 공동으로 민법개정작업을 추진하면서 성년자에 대한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성년자에게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아닌 후견인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한 추세로 보여지는 바, 만일 이 제도가 일본식 모델(일본은 이미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을 도입하는 것이라면 후견계약은 위임자가 수임자(임의후견인)에 대하여 정신상의 장애로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불충분한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생활, 요양간호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부여하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고, 이 임의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임의후견인제도나 계약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도 각광(?)받는 제도가 될 것이다. 이 임의후견계약은 단순한 당사자간의 사적 계약의 방식이 아닌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일본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증업무 영역의 확대를 의미하게 된다.

(3) 중요 신분행위에 대한 공증의 확대

공증인의 역할은 사실상 사법(私法)의 전 영역에 걸쳐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개인의 재산법 및 가족법상의 중요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증인에 의한 공증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가족법상의 중요한 법률행위 중 상속, 유언, 부부재산계약, 재산분할약정 등은 공증을 거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각종 신고 중 창설적 신고에 해당하는 혼인신고, 이혼신고 전 협의이혼의사 확인, 입양신고, 협의파양 신고 등에는 공증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증이라는 강력한 증거력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용이함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공증인들의 노력에 의한 업무영역의 확대

1. 공증인들의 공증영역 개척의 필요성

부동산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 부동산 명도, 인도 등에 대한 집행증서의 확대, 협의이혼의사확인에 대한 공증 또는 인증, 임의후견인제도의 도입과 그에 따른 계약의 공증 그리고 중요 신분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공증 등은 이를 강제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의미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제반 법률들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어야 가능한 경우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 즉 입법에 의하지 않고 기존의 공증업무 영역에서 공증을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 이것은 공증인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공증인이 전국적으로 400여 개소에 이르는 현실에서 공증인들이 입법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만을 촉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염치없는 일이기도 하다. 공증인들의 노력에 의하여 공증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사실 적지는 않다. 다년간 공증실무에 종사하였으면서도 한 번도 취급해 본 일이 없는 공증업무는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공증인법 제2조 및 제34조에 근거한 사실실험공정증서, 대여금고의 개방점검, 화재현장확인,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사실실험공정증서, 주주총회의 참석 등은 실제 의뢰(촉탁)가 없는 탓에 공증인의 업무영역임에도 별로 취급, 경험해 보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증인의 개척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공증인의 무시 못할 업무영역이 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공증을 법률로 강제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만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공증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그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공증인 법 개정(2010년 2월 7일)으로 전자공증시대가 열렸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개월 여가 지났지만 아직 단 한 건의 전자공증 촉탁을 받아 본 일이 없는데 이 문제도 공증인들의 업무확대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된다.

2. 홍보와 광고 등에 의한 공증업무의 확대

공증영역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든, 기존의 제도의 확용이든 그것은 홍보, 광고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광고 없이 산업 없다"는 말은 공증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전자공증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아마도 홍보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증인의 홍보, 광고활동은 여하히 할 것인가?

2007년도부터 법무부와 대한공증인협회는 공동으로 1년 중 1주간을 공증주간으로 선포하고 공증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등 나름대로 공증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공증인은 그 기본적 자격이 변호사이고 변호사는 지방변호사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되어 이들의 규칙, 규정에 구속된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 '광고규정'이나 이를 받은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공히 제5조에서 광고방법, 대상, 수단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지하철매표소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지하철노선도 이면에 공증광고를 게재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이 위 광고규정 제5조 제6호 제3항에 해당된다고 하여 시도하지 못한 일이 있다.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 관할구역 내에 구청의 지정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통하여 자신의 업소, 위치, 전화번호를 게재

하여 광고하는 것도 역시 금지되어 있다. 전자공증이라는 편리한 공증방법도 공증인이 이를 세상에 주위에 널릴 광고 홍보수단도 역시 광고규정에 의하여 금지된다.

공증인에게는 변호사와는 별도로 광고인 수단, 방법을 넓게 허용함으로써, 공증인이 공증업무와 영역을 홍보할 수단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현행 대한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가 갖고 있는 광고규정의 폐지,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Ⅴ. 나가는 말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공증제도는 공증인법의 개정으로 법률적 정비는 완비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공증인도 전국적으로 400여 개소에 달하고 있어서 이제 완벽하지는 않으나 국민들이 공증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인 장벽과 현실적인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공증제도를 사법제도 내에서 어떻게 위치 짓느냐의 문제이다. 이것은 이글 모두에서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한바 있다.

즉 공증제도가 사법제도를 단지 보완하여 법원, 검찰로 집중하는 법률분쟁을 예방 감소하는 보조적 위치로 정하느냐 아니면 사법제도와 별개로 공존하는 독자적인 예방사법장치로 발전시킬 것인가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변화 및 발전의 추세를 감안하면 공증제도는 독자적인 예방사법장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한다면 공증제도를 독자적인 법률서비스 수단으로 보고 가급적 공증을 의무화시킴으로써 그 제도적활용도를 높여 가야 한다는 말과 다름없다.

국민들에게는 공증제도가 재판제도보다 훨씬 값싸고 신속하고 안전한 법률서비스로 애용되고, 업무에 종사하는 공증인들에게는 신뢰와 존경을 받고 수입도 안정적인 전문직업인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글에서는 공증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공증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또 공증인들의 치열한 업무혁신과 개척을 통하여 국가의 공증제도가 사법제도와 병행 발전되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KNA